

일반논문

십대 성매매 대응 방식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한 신자유주의적 질서 비판과 향후 피해자 지원 방향에 관한 모색*

민가영**

〈국문초록〉

이 글은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지닌 신자유주의적 통치 질서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후 십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방향을 위한 참조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범주를 통해 작동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리 전략을 검토하지 않을 때 십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로 이동된 채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이들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복합성을 십대 여성 당사자에 대한 격리와 사후 관리로 둘러면서 십대 성매매가 환기시키는 사회의 불안을 봉합하겠다는 이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주제어: 대상아동·청소년, 십대 성매매, 신자유주의, 빈곤, 피해자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8615)

이 논문은 2021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1-0347]

**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부교수(gendertrouble@hanmail.net)

© 20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는 글

이 글은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지닌 신자유주의적 통치 질서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후 십대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발전적 방향의 참조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통해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되고 십대 성매매 여성을 모두 다 일괄적 피해자로 보게 된 이 시점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지녔던 한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에 연루된 십대 모두를 포괄하지 않았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강요행위, 가해행위, 알선유인행위, 인신매매행위가 매개된 성매매 십대를 피해자로 보았다. 따라서 ‘자발적’¹⁾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 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체계도 달랐다. 대상아동·청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은 형벌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형벌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비판되어왔다(장명선, 2018).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2020년 제 20대 국회에서 성매매된 십대 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규정한다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폐지되었다.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 삭제는 N번방 사건이 기폭제가 되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십대 성매매 여성을 대상아동·청소년으

1) 기존 아청법에서 자발성은 폭력과 협박등 강제적 요인의 유무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러나 십대 여성들의 성매매는 빈곤, 남성중심적 성문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상상품화라는 사회 구조적 맥락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학자들과 관계자들(오정희, 2015; 윤덕경, 2017; 이기연, 2016; 장명선, 2019; 조주은, 2017; 조진경, 2016)의 오랜 노력의 결과이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대한 기존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왔다. 첫째로 이 범주의 폐지를 주장하며 가부장적 성상품화라는 사회구조적 피해자인 십대 성매매 여성을 처벌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점에 대해 비판하면서 피해아동 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구분을 문제시 하는 입장(강정은·김희진, 2019; 김병희, 2015; 장명선, 2018; 조진경, 2016)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아동청소년의 상습적 성매매, 성매매의 범죄성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함을 주장하는(박찬걸, 2017; 오정희, 2015) 입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내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의 문제를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형벌정책 맥락에 위치시키고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통해 작동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약자의 문제’를 다루는 신자유주의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아동·청소년 문제를 신자유주의적 형벌정책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성범죄 형벌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 엄벌주의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사회적 연대의 소멸이라는 후기 근대사회의 보편성에 대한 신자유주의 형벌국가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조연민, 2014; 추지현, 2017). 특히 김성언(2014)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형벌정책의 일환인 성폭력 강성정책의 계보가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2000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음을 지적²⁾하고 있어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제에 대

2) 한국 사회의 성범죄 강성정책의 계보는 2000년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 공개와 청소년 성폭력 가중처벌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한 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처벌 강화의 근거로써 요청되는 순결함과 취약함이라는 이상적 피해자 담론은 이에 부합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벌주의 중심에 놓일 수 있게 하였다(추지현, 2017; Garland, 2001).

성범죄 엄벌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논의(권인숙·이건정, 2013; 권인숙·이화연, 2011; 장다혜, 2012; 추지현, 2014)는 성범죄 엄벌주의가 단순히 형사정책의 테두리에만 머무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성범죄 엄벌주의는 성범죄 억제의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써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김성언, 2014). 이에 관해 페미니스트 논의는 엄벌주의의 효과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 엄벌의 합리적 근거로써 피해자 선별기준의 강화와 피해자 책임 강화라는 피해를 둘러싼 보수적 의미의 생산 속에서 발견됨을 지적한다. 즉 성범죄 강성정책은 처벌의 유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수적 담론의 생산과 범죄가 환기시키는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통제의 효과라는 신자유주의적 '의미 생산의 장'이라는 측면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단순히 십대 성매수자를 처벌하고 성매매 십대 여성을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하는 형사정책의 효과를 넘어서서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을 생산하는 장이라는 맥락 속에서 탐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07년 전자발찌 제도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도입을 거치며 본격화 되었다(김지수·이정철, 2011). 2008년-2009년 사이에는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기간 연장, 성폭력 범죄자 주거, 이동, 취업 제한 강화가 이어졌고, 2011년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감시가 더욱 강화됨은 물론 성폭력 친고죄 폐지, 살인, 강도 범죄 등에도 전자발찌를 적용하는 등 강성 정책 원리로 포괄하는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김성언, 2014). 그러나 엄벌 정책이 실제로 현실에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처벌 강화'를 표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처벌 강화'의 표방과 현실 적용 사이의 괴리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정책의 목표가 '문제 해결'에 있는지 아니면 처벌 강화 표방을 통한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려는 데에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요청한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한 신자유주의적 측면의 함의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약자를 관리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사고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의 지배적인 합리성과 연관되어 해석될 필요성 때문이다.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청소년 성매매 양상의 질적 변화가 있음을 지적한 김혜원(2011)의 논의와 2000년대 이후 십대 성매매의 맥락을 신자유주의적 사회변화와 연관 지어 분석한 민가영(2009), 김연주(2011)의 논의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변동과 무관한 성보호법의 의미로 귀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은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도입과 함께 가족 해체 등의 현상을 겪게 된 한국사회에서 성매매 청소년의 존재가 환기 시키는 사회적 위험 지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리 방식의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 범주를 통해 작동되었던 성매매와 사회적 약자인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리 전략을 검토하지 않을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피해자 지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들에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해법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전가시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측면 속에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이 현재 탈성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영역에 어떻게 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거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참조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1)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대상아동·청소년의 범주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는데 첫 번째 입장은 이것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에 준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점에 대해 비판하며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구분을 문제시 하는 입장이다(김병희, 2015; 장명선, 2018; 조진경, 2016).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는 가해자의 강요행위, 특수 관계인의 가해행위, 알선유인행위, 인신매매행위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자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이와 같은 자발과 강요라는 이분법적인 판단기준이 「청소년성보호법」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간주되어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원체계도 피해아동·청소년과 달랐다.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국선변호인 선임,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배려, 증인진술시 영상녹화,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폭력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도 이용하기 어려웠다(조주은, 2017).

대상아동·청소년이 받게 되는 보호처분³⁾은 형사처벌은 아니나 형사제

3)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며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제38조제2항),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교육상담 이수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

재 수단의 하나로써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은 형사피의자가 거쳐야 하는 수사절차 등을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강제력 있는 공권력의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박찬걸, 2014). 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이고 수사경력자료에 기재되어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등 형벌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다는(조진경, 2016) 점은 십대 성매매를 바라보는 당국의 시선을 잘 드러내 주었다. 이로 인해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이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이기연, 2016),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성매수 남성이나 성매매알선자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김병희, 2015). 일단 대상아동·청소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시각도 대상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보호처분을 보호라기보다는 처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가출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 당하던 중 도망 나온 한 십대 여성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성매매로 처벌받게 됨을 공지 받고 처벌이 두려워 고소를 포기하고 경찰서를 나오게 되기도 하였다(조진경, 2016).

한편,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상습적 성매매, 성매매의 범죄성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의 유효성을 주장하였다(박찬걸, 2017; 오정희, 2015). 이 입장에서 대상아동·청소년은 성매수자와 쌍방적 합의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박찬걸, 2017).

의해 성매매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되어야 하는 범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 또한 현재 대상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보호처분이 성폭력 가해자 또는 강력 범죄자와 동일하다는 점은 이들을 범죄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형평성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상아동·청소년의 범주와 그에 따른 보호처분의 폐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식이 상당부분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대상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춘 수강명령이나 위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아동·청소년에게 '자발적' 상담 교육 기회를 우선적 제공하고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강제적 보호처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식으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보호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발은 보호처분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의 문제이므로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박찬걸, 201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둘러싼 기존 논의가 자발성의 문제에 대한 해석 여부와 십대 성매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중심으로 갈라져 왔다면, 본 고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통제의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게 될 법과 정책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안에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관점--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자기 개발하는 주체가 되는데 실패한 무기력한 피해자이며 앞으로 그러한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통해 성매매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개조를 통해 해소하려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초 조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신자유주의적 형벌정책과 대상아동·청소년 범주

신자유주의적 형벌정책은 실제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효과보다는 시장 규제 완화와 복지 예산 축소, 개인의 책임 강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써 형벌이라는 영역을 선택함으로써 구조의 책임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과 실패로 인식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 생산의 장이라는 측면을 지닌다(Wacquant, 2008). 추지현(2014)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격리, 무관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담론과 실천으로써 엄벌주의, 중형주의, 강벌주의(punitiveness, punitivism, punitive turn)의 대두가 형사정책 전반의 '최근' 특징임을 보인 바 있으며, 김성언(2014)은 성범죄 강성정책의 주된 추동력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를 들고 있다.

추지현(2014)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의 성폭력 엄벌주의를 통해 작동하는 가부장적 통념을 비판한 페미니스트 논의는 엄벌주의가 단순히 처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와 피해에 관한 새로운 합리성을 생산하는 담론적 생산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권인숙·이건정, 2013; 권인숙·이화연, 2011; 장다혜, 2012). 엄벌주의를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써 기존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누구를 성매매 피해자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엄벌주의는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엄벌로 연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 기준의 엄격성과 기존의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을 강화시키는 신보수주의적 담론 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의 기준으로써 자발성을 강조하는 성범죄 엄벌주의의 흐름은 2004년 제정된 성매매 처벌법에서도 확인된다.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성매매 피해자라는 예외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윤락행위 방지법과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이

처럼 자발성을 근거로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를 선별하는 흐름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서도 발견된다. 성매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해 방지하고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에 자발성을 도입함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방향은 성범죄 엄벌주의가 비단 성폭력 문제에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니라 성매매 관련 형사정책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엄벌주의 논의의 젠더 중립성을 비판하며 엄벌주의가 어떻게 성폭력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우고 특정 개인의 자질 문제로 환원하는 담론 생산의 장이 되고 있는지를 주목하였다(권인숙·이건정, 2013; 권인숙·이화연, 2011; 장다혜, 2012; 추지현, 2014). 추지현(2014)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폭력을 둘러싸고 대두된 엄벌주의 담론은 강화된 피해자 보호 담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 담론이 착종되어 구성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성범죄 엄벌주의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모두에 실패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재생산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형벌 정책은 범죄의 구조적 원인과 범죄자의 성향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격리,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십대 여성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읽지 않고 표면상으로 드러난 ‘자발성’을 기준으로 범죄자로 취급한 채 보호관찰이라는 개인화된 관리를 통해 십대 성매매 문제를 방지하려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대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며 개인에 대한 격리, 사후 관리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형벌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의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정책의 효율성과 개인 책임의 강조를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된 신자유주의적 통제의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간주하게 될 법과 정책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안에 신자유주의적 개인의 관점--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자기 개발하는 주체가 되는데 실패한 무기력한 피해자이며 앞으로 그러한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통해 성매매에 관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개조를 통해 해소하려는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1차적으로 하였고, 보조적 방법으로써 십대 성매매 지원 전문가 2명을 인터뷰 하였다. 문헌 연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형사 정책의 특징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맥락에서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최근 흐름을 논의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십대 성매매에 관한 법과 정책이 한국 사회의 성매매 법, 정책의 계보 안에서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의들을 검토하였고,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형사정책의 엄벌주의 경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 지를 보여주는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십대 성매매 지원 기관의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 1>은 2018년 12월, <사례 2>는 2018년 7월에 각각 1차례씩 해당 기관 상담실

에서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로써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던지고 인터뷰이의 대답에 따라 질문의 순서와 종류를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에 앞서 인터뷰이에게 인터뷰의 질문에 응답하고 싶지 않을 경우 대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 인터뷰를 도중에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 1〉 십대 성매매 여성 관련 기관 전문가

번호	기관	연령	업무
1	십대 가출 여성 쉼터	42	십대 가출 여성 전반적 지원
2	성매매 여성 지원 센터	34	십대 성매매 여성 상담, 교육, 법률과 의료 지원

4. 신자유주의 시대 십대 성매매의 발생 맥락

십대 여성의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적 구조가 이들의 경제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빈곤과 만나며 발생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70-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의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처음으로 성매매를 시작한 시기는 대부분 20대 이후로 나타난 반면,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 김혜원(2011)은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청소년 성매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로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성매매의 이러한 저연령화 현상은 2000년대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김혜원, 2011). 이 시기 청소년 성매매의 질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해 개별화된 성매매의 증가,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부장적

성문화의 확산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시기 청소년 성매매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맥락으로써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신빈곤층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 성매매 이유에서 '숙식해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매매 청소년 중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김혜원, 2011)은, 이 시기 청소년 성매매의 질적 변화 맥락에 신자유주의적 질서 확산에 따른 빈곤층 확산과 가족 해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장에서는 한국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신빈곤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십대 성매매 양상의 특징에 대해 기존 논의와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확산된 십대 성매매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기와 맞물려 등장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사회구조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줄 것이다.

여성들의 열악한 사회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착취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2000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다루고 있는 시기의 십대 성매매 양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질서 이후 초래된 신빈곤층 가족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재편과 함께 노동의 유연화, 고용의 불안정, 복지제도의 전반적인 후퇴 등이 초래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기 어려운 신빈곤층을 양산해 왔다(조명래, 2006). 조명래(2006)는 현재의 빈곤 특징으로써 물질적 결핍과 비물질적 결핍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소득, 건강, 교육 등의 복합적 문제와 함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를 빈곤층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

경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 빈곤층 가족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

족 해체는 구빈곤층이 가족을 중심으로 빈곤을 탈피하려 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며,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관계망의 배경을 이룬다. 2000년대 이전과 이후 십대 가출 문제에서 가출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차이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가출한 자녀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과거와 대조적으로 2000년대 이후 십대 가출 자녀를 둔 부모는 이들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자녀의 행방을 묻는 교사에게 “나도 모른다. 왜 나한테 전화하느냐. 이제 전화하지 말라.”라고 대꾸하거나 집을 나간 자녀의 전화를 받아도 들어오라는 말 대신 “몸 건강히 잘 있으라”는 말을 전한다. 심지어 이제 부모는 자녀가 가출하기도 전에 자녀를 보호시설에 데려다 주거나 자녀만 남겨둔 채 자신이 집에서 먼저 가출하기도 한다(민가영, 2016). 현재의 신빈곤층 가족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전망을 상상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을 대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해체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연주(2011)는 부모, 형제,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폐쇄적 사회 관계망이 빈곤 상태 재생산과 성매매 유입에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신빈곤층 가족의 해체와 맞물려 십대 성매매를 가속화 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의 성을 이용하여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활용하여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려는 남성들의 증가가 놓여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여성의 성을 이용한 ‘사업’은 이제 특정한 업주의 문제를 떠나서 또래 남성들 속으로 확산될 만큼 십대 여성들의 일상과 밀착된 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의 N번방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전개된 가족, 노동시장 등의 불안정성은 십대 여성의 성을 수익구조로 전환시키는 매우 광범위한 시장 형성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복잡한 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자발성으로 해석하여 개인에 대한 처분의 문제로 풀어내려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통해서 사회구조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

응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5. 사회구조적 성착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리 방식: 십대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에 내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

1) 십대 성매매 문제 해결의 사사화

여성주의 연구에서는 십대 여성의 성매매가 여성의 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적 구조가 이들의 경제적, 관계적, 사회문화적 빈곤과 만나며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십대 여성들의 뒤에는 이들의 경제적, 관계적 빈곤을 이용하여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사회 구조가 있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이처럼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 발생하는 십대 성매매의 문제를 당사자 개인에 대한 처분을 통해 해소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을 잘 보여주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이들의 성매매가 외관상 자발성(폭력, 인신매매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성매매)을 띠고 있으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게 하였다⁴⁾(조주은, 2017).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은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이들을 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강제 처분을 내렸다⁵⁾. 성매매 관련 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에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했

4)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을 때 범죄자 취급 정도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41.5%, 보통이라는 응답이 24.5%, 아니라는 응답이 34%로 조사되고 있다(조진경, 2016).

다는 응답이 46.6%를 차지했고 이어 모르겠다가 32%,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18.4%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보호처분의 성격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교육이라기보다는 처벌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조진경, 2016). 또한 성인 성매매 여성은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도 않았다. 이는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삶의 조건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 성매매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닌, 성매매를 하는 십대 당사자 개인에 대한 보호처분, 격리, 처벌을 통한 성매매 관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성매매를 야기한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접근 없이 당사자에 대한 격리와 처벌을 통한 관리는 결국 십대 성매매 유입의 핵심 기제인 가부장적 성착취와 빈곤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개인에 대한 처벌을 통해 방지하려는 의미를 지닌다. 현장에서 십대 성매매 문제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말은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준다.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위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다니는 가능성 있는 애들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그런 애들을 지원을 해주냐. 개네들한테 뭐 하려고 우리가 예산을, 세금을 쏟아 붓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애네 문제 일으키면 그냥 소년원 보내 이런 마인드죠. 애네들이 뭐 어떻게 변화가 되겠느냐 이런 식(<사례 2>).

5) 대상아동·청소년은 검사에 의한 보호처분을 위해 관할법원소년부에 송치되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제 32조 제 1항)에 따라 1. 보호자 등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5.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 병원 등 의료보호시설 위탁 8.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성매매된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해 처벌에 준하는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방식은 신자유주의적 사회의 위기가 증폭되어감에 따라 확산되는 문제를 개인에 대한 처벌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적 형벌국가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십대 성매매’가 환기시키는 사회적 무능함의 통제: 대상 아동·청소년 범주를 통한 성매매 문제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

신자유주의적 자본투자의 재설정에는 많은 빈곤층을 형성하였고 빈곤층 젊은이들은 삶에 대한 전망을 갖지 못한 채 범죄에 노출된다(바캉, 2010). 신자유주의적 경제 불안정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빈곤층 가족의 자녀들인 십대 가출 여성들 또한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⁶⁾. 이런 점에서 2000년대를 전후로한 청소년 성매매 현상은 단순히 청소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경험하게 된 불안정

6) 그렇다면 빈곤층 십대만 성매매를 하는 것일까? 십대 여성이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조진경, 2016)(복수응답)로 대답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잘 곳이 없어서’로 35%를 차지한다. 25.2%를 차지한 ‘배가 고파서’ 응답과, 26.2%를 차지한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또한 이들의 성매매에 빈곤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친구의 권유’ 29.1%와 ‘강요에 의해서’ 15.5%는 이들의 가출 문화를 참고로 하였을 때(김연주, 2011, 2014; 민가영, 2016; 윤선미·이나영, 2012) 가출 시 함께 거주하는 또래 집단의 ‘또래포주’나 ‘에인 겸 알선업자’에 의한 강요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은 십대 여성의 성매매에 가출, 잘 곳, 먹을 것, 일자리 등이 개입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십대 성매매와 빈곤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물론 십대 여성의 성매매 이유에 ‘화장품/옷 구입’ 30.1%, ‘성형비 마련’ 2.9%와 같은 요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십대 성매매가 특수한 집단에만 국한된 실천이 아니라 여성의 몸과 성을 자원으로 상품화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의 연관 속에서 10대 여성들 일반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짐작케 한다.

과 위기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써 위치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십대 성매매 여성의 사회적 맥락을 민가영(2009)과 김연주(2011)는 십대 성매매의 문제가 기출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의 중단, 열악한 저임의 청소년 노동시장, 저성장 시대에 학력 자본에 대한 전망 상실과 학업중단으로 인한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관계의 취약함 등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는 가부장제와 만나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성매매 처벌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측면을 지닌다.

물론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고 성매매수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통한 금지주의가 작동하였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정과 함께 한국 사회는 성매매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변화를 갖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이 과거의 윤락행위등방지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세분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성매매 행위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자발성을 기준으로 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의 형성이다. 한국의 성매매 관련법에서 성매매 당사자 여성은 늘 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중요한 전환이 2004년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처벌법을 제정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의 동법 제21조(벌칙)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성매매 여성 처벌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을 판 여성이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동법 제6조 제1항) 성매매 여성을 성판매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하게 되었다(박찬걸, 2012). 즉, ‘자발성’을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자

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로 가르는 변화의 분기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발성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보호처분의 대상을 가르는 방식은 십대 성매매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⁷⁾. 물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이 '방해받지 않는 성적 발전을 통한 청소년 보호'라는 점에서 청소년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닌 존재로써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한국 사회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자발성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피해자 인정 기준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성매매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통해 방지하고 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에 자발성을 도입함으로써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으로 돌리는 이와 같은 방향은 한국 사회의 성매매 관련 형사정책이 신자유주의적 맥락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는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에 사회적 위기와 불안의 징후에 대한 대응으로써 강한 처벌의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모든 영역에서 자유시장과 개인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통치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경

7) 박찬걸(2009)은 청소년성매수죄의 개념과 성매매 처벌법상의 단순성매매죄의 개념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청소년성매수죄의 경우에는 불특정인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 성판매자측인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금품 이외에도 직무·편의제공 등의 대가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 성교와 유사 성행위 이외에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 등이 상정되어 있다는 점, 성구매의 당사자가 성판매의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일정한 성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성구매의 대가 등만을 지급한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성판매의 당사자와 일정한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청소년성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0년 아청법 개정 이전에는 성인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 모두 피해자(아동 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로 인정받는 기준으로써 자발성 여부가 작동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제적 도덕적 질서의 균열을 초래하는 범죄적 행위들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법집행을 실행할 권리와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Wacquant, 2008). 로익 바캉(Loic Wacquant)은 노동계급 중 소위 불안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형벌정책을 신자유주의 국가의 주요 특성으로 추출해냈다. 바캉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형벌정책의 확대 가능성을 수반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관리하고 사회경제적 무능을 은폐함으로써 사회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바캉은 형벌국가의 등장을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아닌 빈곤의 범죄화 가능성의 공표를 통해 사회적 불안정에 대응하려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Wacquant, 2008). 즉 빈곤층의 범죄화는 실제로 범죄를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국가가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빈곤층의 문제를 사회적 위협의 지표로 간주하고 관리하여 체제의 유지를 기하는 하나의 통제 전략인 셈이다(Wacquant, 2010). 위와 같은 맥락에서 김성언(2014)은 사람들이 위협과 더불어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가공된’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자신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고 미래와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게 된 현실을 통제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이 범죄에 대한 강성정책의 중요한 추동력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김성언(2014)은 현재의 성범죄 강성정책의 의미를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는 여론으로 인해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신자유주의 정부가 강경한 처벌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와 제휴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풀이함으로써, 강성주의 성폭력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통치라는 렌즈로 들여다볼 때 그 본질적 의미가 분명해짐을 강조하였다. 즉 형벌제도는 처벌 가능성의 공표를 통해 사회를 관리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억압의 도구가 아닌 생산의 도구라는 특징을 지닌다.⁸⁾

8) 빈곤의 범죄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정권들, 미국 레이건, 클린턴, 영국 블레어 정부, 독일 사민당 슈뢰더 정부, 프랑스 사회당 조스팽 정부 등이 적극 채택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형벌주의로의 전환이 명백히 신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연민, 2014).

문제를 유발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해결 대신 표면적으로 가시화된 문제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의 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화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에 관하여 빈곤에 대한 통치를 연구한 조반나 프로카치(Giovanna Procacci)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프로카치는 사회적 불평등 혹은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의 제거가 빈곤 통치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빈곤에 대한 통치에서 빈곤은 산업사회의 반박불가한 주어진 사실로 간주된다. 따라서 빈곤과 사회적 빈곤을 구분하여 후자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빈곤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 혹은 사회구조적 약자에 관한 정의의 차원이 아니라 빈곤이 일종의 사회적 위협의 표지가 되는 '위험한 차이'에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대중들이 자신들의 삶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지배 집단의 무능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빈곤 혹은 빈곤을 야기하는 사회구조가 아니라 빈곤을 통해 드러나는 '위험한 차이'이다(프로카치, 2014).

데이비드 갈런드(David Garland)는 결혼과 가족 제도의 붕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사람들의 비관과 경제적 불확실성 등 후기 근대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인구집단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담론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두려움이 가혹한 처벌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통제의 문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영미 사회에서 복지 수혜자, 싱글맘, 불법 이민자 등이 엄벌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은 이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위험'과 갈등의 축으로 과잉 결정된 자들이기 때문이라 주장한다(Garland, 2001)⁹⁾. '위험한 자'들을 공간적으로

9) 한국에서는 소위 '비행청소년'으로 불리는 이들이 사회적 위협의 중심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의 소년법은 2007년 소년법 대상소년의 연령 하한 연령 인하, 소년법 형량완화 규정의 전면 배제, 소년법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로부터 10년 뒤 소년강력범죄의 공포화, 저연령화, 재범률의 증가 등을 이유로 소년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정희철, 2018). 이 기간 미디어에

격리시키고 ‘무용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등장한 배제의 기술들이 결국 사회적 약자로 향해 있다는 점은 형벌정책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사회구조적 약자에 대한 대응 방식임을 보여준다(Pratt,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빈곤한 십대 여성이 성매매에 참여하기까지 관여된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대응 보다 성매매된 피해자 십대 여성을 격리, 관찰함으로써 성매매를 예방하고 자발성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구분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대응 방식은 십대 성매매라는 문제가 환기시키는 사회적 위험 지표를 지우려는 맥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인 십대 여성들에게 물으면서 이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문화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공격했던 대상은 성매매를 야기한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성구매자, 알선자가 아니라 ‘십대 성매매’가 환기시키는 사회의 총체적 무능함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체제 유지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사회구조적 빈곤의 복합성과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성문화라는 구조의 문제를 개인에 대한 처분과 관리로 돌리면서 십대 성매매가 환기시키는 사회의 불안을 봉합하겠다는 이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십대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구조적 모순에 처한 ‘존재’가 아닌 사회의 정당성 유지를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반사회적 ‘문제’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 때 문제의 초점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결이 아닌 사회가 정한 정상성에서 벗어난 ‘문

서는 2017년 9월에 발생한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을 중심으로 천안여중생 폭행사건, 아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잔인하고 흉포화된 소년범죄들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결과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내지 엄벌화의 요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박호현·김종호, 2018).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소년 강력범죄가 흉포화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은 왜 그 시점에 특정한 사안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현 되었는가에 관한 것일 것이다.

제아'에 대한 격리와 사후 감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성매매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지배적 사회 질서가 설정한 정상성에 대한 보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통해 작동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통해 작동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이 비판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점은 이제 피해자로 규정된 성매매된 십대 여성에 대한 개입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이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후 피해자로 새로이 규정된 이들을 위해 필요한 성찰의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를 통해 작동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관리의 방식-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부담을 개인의 격리를 통해 관리하려는 방식-은 다음에서 보게 될 성매매 피해자와 위기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지원 방식과 관점 안에서도 발견된다. 다음 장에서는 현재 탈성매매 피해자와 위기청소년 범주에 대한 지원 안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기술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6. 아동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의 방향: '위기관리'와 '정상적 생애서사'에 갇히지 않는 지원으로

1) 피해자 지원에 내재한 '정상적 생애서사'를 넘어서기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의 폐지는 이제 성매매된 십대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간주하여 그에 걸맞은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

하게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점이다. 기존의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방향은 주로 지원 시스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현재 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방향은 크게 유입 방지와 탈성매매로 나뉘어 유입의 기회를 차단하는 사전 개입과 유입된 청소년을 탈성매매 하도록 돕는 사후 지원으로 나뉜다. 최근의 성매매 피해 지원 논의(배화정, 2014; 윤옥경·이유진, 2014)는 청소년 성매매 내부의 차이(탈출형 성매매, 학교 폭력 연계형 성매매 등)를 고려하여 피해 지원의 방향을 보다 전문화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위기청소년과 성매매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세분화, 전문화된 개입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십대 성매매에서 무엇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탈성매매한 삶의 전망을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관점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탈성매매 피해자 십대를 포함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위기청소년’이라고 범주화된 이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 안에 내재한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난주(2010)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제공 방식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십대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서 십대는 미래의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한 대상으로 간주 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질서 확산과 함께 형성된 위기청소년 개념을 비판적으로 연구한 김미란(2012)과 추주희(2020)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김미란과 추주희는 IMF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급격한 사회구조 변동에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써 ‘위기청소년’이라는 범주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청소년은 과거 특정 청소년 집단을 개별적 일탈로 간주하던 과거의 이해방식과 선을 긋고 이들의 문제를 사회구조변동의 산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기청

소년의 삶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사회적 안정 위협과 국가의 사회적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장래 복지 의존자로 남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김향초, 2013)에 있다. 이러한 목적 속에서 행해진 지원은 위기청소년들이 정상적 사회 규율을 내면화 하게 하고 학업 복귀, 졸업, 검정고시, 자격증, 취업 등으로 대표되는 자기관리와 자기계발을 통해 장래의 복지 의존자가 되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부담과 손실을 최소화 하려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즉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근본 원인이 아닌 현재의 지배적 질서 유지를 위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 방식은 피해자를 범죄화함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 모두를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전문가 인터뷰는 성매매로 인해 보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십대 여성들을 바라보는 위와 같은 관점을 잘 드러내준다. 탈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사회적 범주로 분류되며 이들에 대한 정책의 목표는 이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의 범주 안으로 이들을 편입시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된다.

(그럼 거기서 지원의 합당한 근거로 쳐 주는 건 뭐가요?). 실적. 그거예요. 검정고시 몇 명 합격했냐. 상담 했냐. 학교복귀 몇 명 했냐. 가정복귀 몇 명 했냐. 이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그 성공 사례들이 참 많아요. 데이터로 낼 수 없는 성공 사례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맨날 거리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이요. 여기 들어와서요, 3개월, 6개월을 지내고 가요. 이거는 굉장한. 아이한테는 굉장히 혁신적인 자기의 그런 건데. 그런 경험인데. 그러고 나서 자립을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굉장한 혁신이 된 건데. 그거를 데이터로 낼 수가 없는 거죠. 근

데 거리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간을 견딘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엄청난 건데. 엄청난 거죠.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남들한테 몸을 팔지 않아도 되고, 어떤 범죄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나를 다시 점검하고, 보고, 새롭게 충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적이고 성공사례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사례 2>).

추주희(2020)는 현재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이 중산층 가족에 기반 한 정상적 생애사회 회기 할 것을 종착지로 가정하면서 결국 이것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역량에 기댈으로써 이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에게 많은 사회적 책임이 전가됨을 비판하였다. 가족을 통한 복지를 수행하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성매매로 유입된 십대 여성들에게 학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이들이 그릴 수 있는 미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정고시, 졸업, 자격증, 취업과 같은 사회 복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의 중요한 실적 지표가 될 때, 이는 추주희의 지적대로 '사회적 안정 위협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위기관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정량화된 지표는 자활 사업의 제도화와 연관되며(권용현, 2007), 탈성매매 피해자 지원에서도 이와 같은 정량화된 지표-탈성매매 인원, 취업자 수, 자격증 취득 건수 등 자활 '실적'에 대한 양적 지표-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연관되어 중요시된다. 이를 비판해온 연구자들은(김애령·원미혜·황정임 외, 2004; 김인숙, 2008) 현실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자활은 가시적인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설령 그 성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량적 지표로 평가되기 어려움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와 같은 '사회적 위기관리를 위한 포섭'을 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2) 파편화된 위기관리에서 총체적 삶의 맥락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의 변화로

김인숙(2009)과 김연주(2014)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자활 논의는 대상아동·청소년 범주가 폐지된 이 시점에 피해자 지원의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해 준다. 과거 성매매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선도보호와 사회복귀 개념은 이제 자활로 전환되었다(최정은, 2007). 그런데 크룩생크(2014)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활은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한 편에서 자활은 그들이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한다. 그러나 크룩생크는 또 다른 한편에서 ‘자활’을 매개로 개인이 이 사회의 지배적 질서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는 ‘능동적 피지배’라는 자활의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한 목표인 자활은 그것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의 연관 속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양 측면을 지니게 된다. 이때 자활이 사회적 부담에 대한 손실을 개인의 책임을 통해 최소화 하려는 위기관리의 차원으로만 초점이 맞추어 질 때 자활은 또 다른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인숙은 10대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활이 자아에 대한 재해석, 관계에 대한 재해석, 자원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무화시키지 않겠다는 자각과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아의 주체화가 될 것을 요청한다. 이 과정은 표준화된 정상적 생애서사에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의 다양성 알고 체험하는 것, ‘술 먹고 돈 쓰는 것 외에도 걷는 것, 운동하는 것, 강아지 돌봐주는 것도 노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들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일상의 사소한 자원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총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자활의 ‘총체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자활 개념을 재구성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김인숙, 2008). 김연주(2014)는 십대가 지니고 있는 판단력, 책임감, 자의식, 도전, 창의성 등을 부각하며, 이들이 자율성과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여성주의적 인식을 기반으로 신뢰에 기반 한 자율성을 피해자 지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꼽았다. 즉 정량화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는 측정될 수 없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경험과 삶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목도하여 자기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 십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부담과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관리’의 차원으로부터 이동하여 구체적인 한 존재에 대한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7. 나가는 글

이제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해체되고 성매매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논의의 초점은 ‘피해자’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며, ‘피해’에 대한 해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나가는가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사회구조적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개인의 개조를 통해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던 대상아동·청소년 범주의 신자유주의적 측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빈자들의 개인행동, 생활 스타일, 정신상태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는 이제 사회 계급은 능력자와 무능력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대조적 차이로 대체되며,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의 인성과 능력 차이 그리고 그것에 따른 구분으

로 대체된다고 보았다(Murray, 1997; 바캉, 2010: 70-71에서 재인용). 십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상아동·청소년 범주는 단순히 성매매에 개입된 십대에 대한 사회의 보호처분을 넘어서 의미를 지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대한 관리는 이 사회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반 하여 작동되기 위해 그 정상성에 진입하지 못한 대상을 관리하고, 그들을 양산한 사회의 구조적 무능력을 은폐하려는 통치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지적한 대로 금지와 규제의 권력이 정상화를 통한 안전 메커니즘이라는 통치성으로 이동되면서 사회의 지배질서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정상성'의 범주를 침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선택하였고, '정상성'에 편입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제한적 지원을 하였으며, 딱히 침해도, 편입도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방치라는 사회적 관리를 작동해 왔다(푸코, 2011).

성매매된 십대 여성은 사회구조적 빈곤에 대한 성별화된 착취의 피해자로서 이제 '처벌'에 준하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때 또 다시 지원의 방향과 목적이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는 이 사회의 '정상성' 편입이라는 목적으로만 향하게 될 때에는 책임과 능력을 입증하는 자에게만 그 지원의 문이 넓게 열리게 되며, 또다시 많은 이들이 방치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십대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문제'가 아닌 한 명의 '존재'로써 다양한 방식의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원 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성매매 유입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중적 성평등 교육, 성매매 유입뿐만 아니라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 청소년 노동시장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성매매 아동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달 체계 구축과 함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집중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는 후속 작업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정은·김희진(2019), “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아동 성착취 제도 개선 과제”, 『이화젠더법학』, 제 11권 1호, 221-257쪽.
- 권용현(2007), “여성가족부의 자활지원정책의 전망 및 계획”, 『성매매 방지 현장의 실천과 쟁점』, 서울: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86-91쪽.
- 권인숙·이화연(2011),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아시아여성연구』, 제 50권 2호, 85-118쪽.
- _____·이건정(2013),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여성학』, 제 29권 3호, 181-218쪽.
- 김미란(2012), “청소년 이행(transition)과 ‘위기 청소년’ 담론에 대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 22권 1호, 51-76쪽.
- 김병희(2015),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재판청구권, 평등권,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하여”,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주최 토론회(2015.10.19).
- 김성연(2014), “성폭력 강성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죄의 두려움, 도덕적 공황, 그리고 신자유주의 범죄 정책”, 『피해자학연구』, 제22권 1호, 5-40쪽.
- 김애령·원미혜·황정임 외(2004), 『성매매로부터의 탈주, 그리고 전업』, 서울: 막달레나의 집.
- 김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폐쇄적인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1권 2호, 239-273쪽.
- _____ (2014), “성매매 피해 십대 여성들의 자활을 위한 쉼터의 역할과 위치 모색 : A 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30권 3호, 123-160쪽.
- 김인숙(2008), “‘자활’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탐색 -성매매여성 자활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2권, 95-129쪽.
- _____ (2009), “시설거주 10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활 과정”, 『한국아동복지

- 학』 제30호, 133-157쪽.
- 김지수·이정철(2011),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2011.12.2).
- 김향초(2013), 『위기청소년의 성인되기 : 보호체계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중심으로』, 서울: 학지사.
- 김혜원(2011),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8권 4호, 301-327쪽.
- 민가영(2009),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산에 따른 십대 여성의 성적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 5권 2호, 5-35쪽.
- _____ (2016), “ ‘피해협력성’을 이끌어 내는 ‘비강압적 착취’의 맥락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32권 1호, 101-141쪽.
- 바캉: 로익(2010), 『가난을 엄벌하다』, 류재호 옮김, 서울: 시사인, Wacquant, L.(2009), *Punishing the Poor: The Neoliberal Government of Social Insecur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박찬걸(2009),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권, 249-284쪽.
- _____ (2012), “한국 성매매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 -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13권 2호, 297-333쪽.
- _____ (2014),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 1호, 191-192쪽.
- _____ (2017),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 30권 4호, 105-159쪽.
- 박호현·김종호(2018),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소년사범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78권, 1-26쪽.
- 배화정(2014), “서울시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쉼터>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3호, 83-111쪽.

- 양난주(2010),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 『한국 사회복지학』, 제62집 4호, 79-102쪽.
- 오정희(20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상청소년 관련 토론문”,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십대여성인권센터 주최 토론회 (2015.10.19).
- 윤덕경(2017), “청소년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제도 개선방안”, KWDI 이슈 페이지.
- 윤선미·이나영(2012), “청소년의 가출 후 경험 연구: 경계들 사이의 생존 지대를 찾아”, 『한국여성학』, 제28권, 119-171쪽.
- 윤옥경·이유진(2014),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26권, 297-335쪽.
- 이기연(2016),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국가인권위원회 회 주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2016.11.3).
- 장다혜(2012), “성폭력 범죄를 둘러싼 현대사회의 신화들”, 『여/성이론』, 제27권, 222-235쪽.
- 장명선(2018),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제10권 13호, 111-147쪽.
- _____ (2019), “채팅앱 매개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환경과 법·제도적 대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 정희철(2018), “소년법 개정의 방향: 국회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少年保護研究』, 제31권 3호, 405-438쪽.
- 조명래(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연민(2014),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형벌국가의 등장”, 『공익과 인권』, 제14호, 445-505쪽.
- 조주은(2017),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 분석”, 더불어

-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 국회 아동 여성 인권정책포럼 주최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심포지움 발표문(2017.7.26).
- 조진경(2016), “아동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인권상황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아동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2016.11.3).
- 최정은(2007), “자활지원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성매매 여성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한 대안 모색”,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46-54쪽.
- 추주희(2020), “소년 혐오인가 사회 위기인가? 위기청소년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경제와 사회』, 제124호, 127-161쪽.
- 추지현(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30권 3호, 45-84쪽.
- _____ (2017), “엄벌주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의 동향과 쟁점”, 『형사정책연구』, 제28권 2호, 155-179쪽.
- 크룩생크, 바바라(2014), 『시민을 발명해야 한다 - 민주주의와 통치성』, 심성보 옮김, 서울: 갈무리, Cruikshank B.(1999), *Will to Power: Democratic Citizens and Other Subject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푸코 미셸(2011), 『안전, 영토, 인구-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 오토르망, 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서울: 난장, Foucault, M.(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1978*, New York: Picador.
- 프로카치, 조반나(2014), “사회경제학과 빈곤의 통치”, 『푸코효과: 통치성에 관한 연구』, 심성보, 유진, 이규원 외 옮김, 서울: 도서출판 난장, Proccaci, G.(1991), *The Foucault Effects: Studies in Governmentality* (1991), Graham Burchell, Colin Gordon, Peter Miller(e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arland, D.(2001), *The Culture of Control*,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urray, C.(1997), *Does Prison Works?*, Londers: 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Pratt, J.(2007), *Penal Populism*, London: Routledge.

Wacquant, L.(2008), "Ordering Insecurity: Social Polarization and Punitive Upsurge", *Radical Philosophy Review*, 2(1), pp. 1-19.

_____(2010), "Crafting the Neoliberal State: Workfare, Prisonfare and Social Insecurity", *Sociological Forum*, 25(2), pp. 197-220.

(논문 투고일: 2020.04.29, 심사 확정일: 2020.12.09, 게재 확정일: 2021.04.05)

〈Abstract〉

A Response to Teenage Prostitution and Neoliberal Governance: A Criticism of the Neoliberal Order Inherent in the Category of 'Target Children and Youth' and an Exploration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Victim Support

Min, Kayoung*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reference point for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upport for teenage sex trafficking victims by critically examining the neoliberal governance aspect of the 'target children and youth' category for teenage prostitutes. The reason for revisiting this issue after the 'target child and youth' category has been abolished is that failure to review the neoliberal management strategy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that operated through this category can cause teenage prostitutes to become victims, if the neoliberal approach of view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is applied to them. The 'target child and youth' category aims to address the social anxiety evoked by teenage prostitution by turning the complex problems of social structural poverty and patriarchal sexual culture that exploits women's sexuality into a matter of individual lifestyles and behavior. This neoliberal governance technique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operates through the 'target children and youth' categories.

Key words: prostitution, youth and child , neoliberalism, governmentality, victim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